

## 신탁계약 주요 변경사항

효력발생일: 2018년 07월 13일

▶ 투자신탁명:

피델리티 이머징 마켓 증권 모투자신탁(채권 - 재간접형)

피델리티 월지급식 이머징 마켓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 - 재간접형)

- ▶ 주요변경내용:  
 - 기재 수정 등

▶ 변경대비표:

피델리티 이머징 마켓 증권 모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제25조 (수익증권의 환매연기)	기재 수정	<p>① 1.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사유</p> <p>가. (...)</p> <p>나.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·휴장 또는 거래정지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</p> <p>다. (...)</p> <p>라.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 결정의 일시적인 중지와 주식의 발행, 전환, 환매의 일시적인 중지가 되는 경우</p> <p>마.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로부터 환매대금을 현물로 지급받은 경우</p>	<p>① 1.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사유</p> <p>가. (...)</p> <p>나.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·휴장 또는 거래정지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(아래 예시 참조)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</p> <p><u>i)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 결정의 일시적인 중지와 주식의 발행, 전환, 환매의 일시적인 중지가 되는 경우</u></p> <p><u>ii)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로부터 환매대금을 현물로 지급받은 경우</u></p> <p>다. (...)</p> <p>(삭제)</p>
부칙	신탁계약 변경 체결	-	<p>(추가)</p> <p><b>부칙 (2018.07.00)</b></p> <p>*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

※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▶ **주요변경내용:**

- 전환을 위한 환매 처리 주기 예외 규정 삭제
- 기재사항 수정 등

▶ **변경대비표:**

피델리티 월지급식 이머징 마켓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 - 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제27조의 2 (투 자신탁의 전환)	전환을 위한 환매 처리 주기 예외 규정 삭제	<p>② 제 1 항에 따른 전환 청구가 있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전환청구일(당일포함)부터 제 3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4 영업일)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(당일포함)부터 제 8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9 영업일)에 환매한다. 다만, 해외 금융기관의 연휴 등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환청구일(당일포함)부터 제 10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11 영업일)까지 환매한다.</p> <p>③ 제 1 항에 따른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전환청구일(당일포함)부터 제 8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9 영업일)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(당일포함)부터 제 8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9 영업일)에 매수한다. 다만, 제 2 항 단서에 따라 환매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환매금이 지급되는 날의 기준가격으로 당일 매수한다.</p>	<p>② 제 1 항에 따른 전환 청구가 있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전환청구일(당일포함)부터 제 3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4 영업일)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(당일포함)부터 제 8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9 영업일)에 환매한다. <b>(삭제)</b></p> <p>③ 제 1 항에 따른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전환청구일(당일포함)부터 제 8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9 영업일)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(당일포함)부터 제 8 영업일(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9 영업일)에 매수한다. <b>(삭제)</b></p>
부칙	신탁계약 변경 체결	-	<p><b>(추가)</b> <b>부칙 (2018.07.00)</b></p> <p>*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

※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